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민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58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강 · 윤종균 · 양문석 · 김우영 · 정을호 · 문금주
서미화 · 김문수 · 김 윤 · 복기왕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 의안번호 : 275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

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u>협력</u> 9. · 10. (생략) <u><신설></u>	제19조(업무) ----- -----. 1. ~ 7. (현행과 같음) 8. ----- ----- <u>협력 및 지원</u> 9. · 10.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보

조금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16개 단체에 총 1억 7,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57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2] 2023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반납
건강세상네트워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찾기 캠페인	15,000	915	15,915	-
고성가족상담소	영화로 만나는 인권이야기	5,700	300	6,000	-
구리YMCA	청소년 기후인권 동아리 ‘안녕, 초록씨’	5,700	300	6,000	1,224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	18,000	1,000	19,000	220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2023 여성인권증진 연대활동 “페미니즘+@”	7,200	400	7,600	593
사단법인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나도 인권강사다’	11,800	630	12,430	-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공익제보자 자기 돌봄 강화와 심리적 적응 지원을 위한 집단치유프로그램	8,800	500	9,300	10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	갈등을 넘어 화해를 위한 한일 평화인권문화제: 100년을 향한 한걸음	22,000	4,800	26,800	-
연분홍치마	평등의 감각 연결하기 <당신과 나를 잇는 법>	11,500	720	12,220	-
원주기독교청년회	우리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기 제6회 원주인권박람회	6,300	400	6,700	1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반납
이주와 인권연구소	기후정의를 위한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6,200	350	6,550	-
인권운동연대	시민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정책평가사업	14,000	800	14,800	100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주지역 중증 발달장애인 권리향상 프로젝트 'People first'	8,800	500	9,300	-
청년유니온	지역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정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교육사업	11,000	700	11,700	2,176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삶으로 새롭게 쓰는 성적 권리, 적극적 합의	10,500	580	11,080	-
환경정의	나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입니다 5인의 노동자와 함께 하는 폭염 동행기	16,500	870	17,370	7
계(16개 사업)		179,000	13,765	188,430	4,335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1)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²⁾ 2019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³⁾ 시 해당 보조사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유형,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신청·교부·정산·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국회 등으로부터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표-3]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국회 지적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0. 11.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2. 8.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2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2022. 11.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다양화할 필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1.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보완노력 요구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4. 8.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부처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즉 본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부처가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것이 곧 해당 임무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기획재정부 등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